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연숙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031

발의연월일: 2020. 9. 18.

발 의 자:최연숙·김태호·김상훈

김희국 • 최춘식 • 아수진비

주철현 · 김석기 · 윤재갑

이성만・이은주・강대식

조수진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 증진을 국가의 책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자녀를 함께 양육하는 미성년 청소년부모에 대한 지원 근거는 없는 실정임.

그러나 OECD 주요국에서는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청소년 부모에 대한 지원을 법령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청소년 한부모는 국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나, 자녀를 함께 양육하는 청소년부모는 열악한 양육환경, 생계 곤란 및 학업 지속의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지원이 없어 청소년부모에 대한 지원정책이 필요하다는 문제제기가 지속됨.

이에 자녀를 함께 양육하는 청소년부모에 대한 양육지원, 학업지원 및 복지 증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5호 및 제5장의2 신설).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청소년부모"란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24세 이하의 청소년인 사람을 말한다.

제5장의2(제18조의2부터 제18조의4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의2 청소년부모 지원

- 제18조의2(가족지원서비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부모에게 다음 각 호의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1. 아동의 양육 및 교육 서비스
 - 2.「지역보건법」에 따른 방문건강관리서비스
 - 3. 교육·상담 등 가족 관계 증진 서비스
 -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소년부모에 대한 가족지원 서비스
- 제18조의3(복지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부모와 그 자녀에게 복지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복지지원은 생활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청소년 활동지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에 따라 물품 또는 서비스의 형태로 제공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복지지원 대상 청소년부모의 선정 기준, 범위 및 기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8조의4(교육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부모가 학업을 할 수 있도록 청소년부모의 선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 1.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학적 유지를 위한 지원 및 교육비 지원 또는 검정고시 지원
 - 2.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교육비 지원
 - 3. 「초・중등교육법」 제28조에 따른 교육 지원
 - 4. 그 밖에 청소년부모의 교육 지원을 위하여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부모의 학업과 양육의 병행을 위하여 그 자녀가 청소년부모가 속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학교에 설치된 직장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청소년부모가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교육부장관에게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u> <신 설></u>	5. "청소년부모"란 자녀를 양육
	하는 부모가 모두 24세 이하
	의 청소년인 사람을 말한다.
<u><신 설></u>	제5장의2 청소년부모 지원
<u> <신 설></u>	제18조의2(가족지원서비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부모
	에게 다음 각 호의 가족지원서
	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1. 아동의 양육 및 교육 서비스
	2.「지역보건법」에 따른 방문
	<u>건강관리서비스</u>
	3. 교육·상담 등 가족 관계 증
	<u>진 서비스</u>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청소년부모에 대한 가족지
	<u>원 서비스</u>
<u><신 설></u>	제18조의3(복지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부모
	와 그 자녀에게 복지지원을 할

<신 설>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복지지원은 생활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청소년활동지원 등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내용에 따라 물품 또는 서비스의 형태로 제공한 다.
- ③ 제1항에 따른 복지지원 대 상 청소년부모의 선정 기준, 범 위 및 기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8조의4(교육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부모가 학업을 할 수 있도록 청소년부모 모의 선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 1.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학적 유지를 위한 지원 및 교육비 지원 또는 검정고시 지원
 - 2.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교육비 지원
 - 3. 「초·중등교육법」 제28조 에 따른 교육 지원

- 4. 그 밖에 청소년부모의 교육지원을 위하여 여성가족부렁으로 정하는 사항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부모의 학업과 양육의 병행을 위하여 그 자녀가 청소년부모가 속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설치된 직장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청소년부 모가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교육부장관에게 협조를 요청하 여야 한다.